



자동차 Analyst 신윤철 yoonchul.shin@kiwoom.com

4월 29일자 미국 자동차 품목관세 행정명령 정리

모든 품목관세(sectoral tariff) 정책은 유지하기로 결정, 오히려 리쇼어링(reshoring) 유도를 강화함

①De-stacking: 미국으로 자동차 또는 부품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부과되는 가장 높은 관세율 1개만 선택하도록 수정

- 자동차 품목관세 25%, 철강·알루미늄 품목관세 25%,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 중인 펜타닐 관세 20% 등에서 택 1
- 즉 미국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자동차 업계는 수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중 관세 부담이라는 불확실성이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제거되었기에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품목관세 25%에 대한 손익 분석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됨
- 4월 3일부터 4월 29일까지 다중 관세 부과(stack effect of multiple duties)된 업체는 소급적용하여 보전 예정
- 미국으로의 자동차 수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세 불확실성 중 일부가 제거되었다는 측면에서는 투자심리 회복이 뒤따를 수 있겠으나 기존에 미국향 다중 관세 부담 우려가 크지 않았던 업체들은 실적 가시성 확보 측면의 개선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종합적으로는 이를 실질적인 관세 부담의 '완화'로 평가하기는 어려움

②실질적 관세 부담 완화는 미국 내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경우에 한정: 5월 3일부터 부과될 부품 품목관세 일부 보전

- 5월 3일부터 부과 예정인 자동차 부품(auto parts) 품목관세 25% 역시 예정대로 진행 결정
- 다만 백악관은 자동차 업계의 미국 리쇼어링 유도를 강화할 목적으로 미국 내에서의 자동차 조립에 필요한 부품 수입에 대해 향후 2년간 일부 보전(partial reimbursements)을 결정
- 2025년 4월 3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미국 내에서 조립된 자동차의 MSRP 기준 최대 3.75%까지 보전
2026년 5월 1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미국 내에서 조립된 자동차의 MSRP 기준 최대 2.50%까지 보전
- 3.75%가 산정된 로직은 자동차 MSRP의 15% X 부품 품목관세율 25%. 즉 보전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MSRP 85%에 대해서는 품목관세 미부과 부품으로 구성함으로써 스스로 면세를 얻어낼 것을 요구하는 셈
- 예를 들어 MSRP의 50%에 해당하는 부품을 품목관세 부과 대상국에서 수입 후 미국 내에서 조립된 자동차의 경우, 50%에서 15%를 제한 MSRP의 35%에 대해 부품 품목관세 25% 부과 예정
- 백악관은 품목관세 부과 대상이 아닌 부품의 예시로 미국 내에서 공급된 부품 및 USMCA를 만족하는 부품을 제시

- 결과적으로 미국 내에서의 자동차 생산 확대를 유도해 온 백악관의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자동차 품목관세 25%와 자동차 부품 품목관세 25% 모두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예정

- 4월 29일 행정명령에서 확정된 사항들은 이미 미국 내 생산 비중이 높은 업체들의 손익 관리에는 우호적인 조치일 수 있겠으나 그렇지 못한 업체들은 여전히 소비자 전가 이외의 뚜렷한 대안을 발굴하기 어려울 전망. 또한 이번 행정명령의 수혜를 입는 업체들은 소비자 전가를 계획 대비 축소하여 미국 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노력할 것으로 판단

Compliance Notice

- 당사는 04월 30일 현재 상기 언급된 종목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고지사항

-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,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, 유가증권의 종류, 종목,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.
-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, 복제, 전시, 배포, 전송, 편집, 번역,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·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.